|  |  |  |
| --- | --- | --- |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통신업무요금의 시장조절가 실행에 관한 통고**  2014년05년09일    당 18기 3중전회는 주요 시장결정가격의 메커니즘 정신을 완전히 갖추는 전면적인 심층 개혁과 관련하여 이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국무원 <일부 행정심사 비준 프로젝트 취소와 권리이양에 관한 결정> 요청에 따라 각 유형의 통신업무요금을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모든 통신업무요금은 시장조절가를 균등하게 실행한다. 통신기업은 시장상황과 사용자 수요에 근거하여 통신업무요금 안을 제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요금구조, 요금표준 및 요금계산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2. 통신기업은 자체적으로 통신업무 요금 안을 제정할 때 합법,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업무포장 등 다양한 요금 안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요금 안 구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간단하고 분명해야 하고 안에는 요금표준, 계산방식, 대응서비스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 기본 통신요청과 관련한 고정음성, 이동음성, 문자메시지, 광대역 등 업무에 대해 통신기업은 포장판매를 진행할 때 포장 내 별지로 업무단독의 요금 안을 별도 제공해야 한다. 통신기업은 도시와 농촌의 저수입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더 나은 우대 요금 안을 제공한다. 동일한 근거리통신망 영업구(또는 업무구) 내에서 통신기업은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같은 유형 사용자 요금 안에 대한 동등한 선택권리를 보장한다. 전국 또는 각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집행하는 요금안과 관련하여 집행 전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에 고지해야 하고 기타 요금 안은 집행 전 성(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동급 가격주관부문에 고지해야 한다.  3. 통신기업은 요금투명도를 진일보 제고하고 요금 안 공시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점∙대리점∙인터넷 등 방식을 통해 모든 대중시장의 판매채널에 요금 안을 발표한다. 업무홍보를 확대할 때 전반적이며 정확해야 하고 요금 안 제한성조건 및 기타 사용자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깨워 줘야 하며 요금특혜정도를 편파적으로 과장하거나 사용자 오해를 쉽게 일으키는 허위 홍보는 아니 된다.  4. 통신기업과 사용자 체결의 협의에는 요금표준, 요금계산방식, 대응서비스와 적용기한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 자주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사용자가 적합한 요금 안을 선택하여 편의와 필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 한 어떠한 형식의 강제 또는 제제로 사용자가 지정된 요금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사용자 약정의 요금 안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요금계산 과정 중 관련 표준에 따라 요금계산을 정확히 하고 최소한 1회 간편한 자체 문의방식을 제공하고 사용자 문의를 통해 본인의 통신비용정보를 알고 사용자의 명백한 소비를 보장한다.  5. 통신기업은 유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통신요금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최대한 경영원가를 낮추고 스스로 경영행위를 규범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더 나은 품질과 저렴하고 투명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과 동급 가격주관부문은 각자 법정직책에 따라 해당지역 통신기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중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사용자 합법권익을 성실히 보호하며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지체없이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본 통지는 2014년 5월 10일로부터 집행한다. <국가계위, 우정부 통신요금 문건 진일보 규범에 관한 통지>(계가비[1997] 2385호), <국가계위, 정보산업부 성(구, 시) 통신관리국 회동 동급 가격주관부문 관리의 통신업무 수금프로젝트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계가격[2002] 1320호), <국가계위, 정보산업부 ‘통신요금 심사비준∙비안 절차규정(시행)’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계가격[2002] 1489호) 등 문건은 동시 폐지한다. |  |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  **关于电信业务资费实行市场调节价的通告**  2014年05月09日    　　为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关于全面深化改革、完善主要由市场决定价格的机制精神，按照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一批行政审批项目的决定》要求，决定放开各类电信业务资费。现将有关事项通告如下：  　　一、所有电信业务资费均实行市场调节价。电信企业可以根据市场情况和用户需求制定电信业务资费方案，自主确定具体资费结构、资费标准及计费方式。  　　二、电信企业自主制定电信业务资费方案时，应当遵循合法、公平、诚信原则，考虑用户的不同需求，提供业务打包等多种资费方案供用户选择。资费方案结构应科学合理、简单清晰，方案中需列明资费标准、计费方式、对应服务等内容。对涉及用户基本通信需求的固定语音、移动语音、短信息、宽带等业务，电信企业进行打包销售时，必须另外提供包内单项业务单独的资费方案。鼓励电信企业为城乡低收入群体提供更加优惠的资费方案。在同一本地网营业区（或业务区）内，电信企业应保证具有同等交易条件的同类用户对资费方案具有同等的选择权利。涉及在全国或跨省（自治区、直辖市）执行的资费方案，应在执行前告知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其他资费方案应在执行前告知省（自治区、直辖市）通信管理局、同级价格主管部门。  　　三、电信企业应进一步提高资费透明度，建立资费方案公示制度，通过营业厅、代理代办点、网站等方式公布所有面向公众市场的在售资费方案。在业务宣传推广时应全面、准确，对资费方案限制性条件及其他需引起用户注意的事项，应履行提醒义务，不得片面夸大资费优惠幅度或作容易引起用户误解的虚假宣传。  　　四、电信企业与用户签订的协议中应包含资费标准、计费方式、对应服务和适用期限等内容。应充分尊重用户自主选择权，为用户选择适宜资费方案提供便利和必要帮助，不得以任何形式强制或限制用户选择其指定的资费方案，未经用户同意，不得擅自更改与用户约定的资费方案。在计费过程中，应按照相关标准准确计费，至少提供一种便捷的自助查询方式，供用户查询自身通信费用信息，确保用户明明白白消费。  　　五、电信企业要严格执行有关政策，履行社会责任，建立健全电信资费内部管理制度，自觉规范经营行为，努力降低经营成本，为用户提供更优质、更低廉、更透明的电信服务。各省（自治区、直辖市）通信管理局和同级价格主管部门按各自法定职责加强对本地电信企业的指导、监督，加强事中事后监管，切实保护用户合法权益，遇到新情况、新问题应及时报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改革委。  　　本通告自2014年5月10日起执行。《国家计委、邮电部关于进一步规范电信资费文件的通知》（计价费[1997]2485号）、《国家计委、信息产业部关于印发省（区、市）通信管理局会同同级价格主管部门管理的电信业务收费项目的通知》（计价格[2002]1320号）、《国家计委、信息产业部关于印发<电信资费审批备案程序规定（试行）>的通知》（计价格[2002]1489号）等文件同时废止。 |